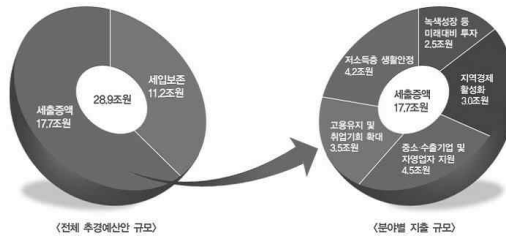


##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

- 정부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면서도 위기 이후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총 28.9조 원의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
-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(3.5조 원)
  - 추진목표 : 일자리 유지 22만 개, 일자리 만들기 55만 개, 교육·훈련 확대 33만 개

[그림 1] 2009년 추경규모 및 중점지원대상사업



- ① (일자리 지키기·나누기) 재직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 강화(22만 개, 1,734 → 6,852억 원)
  -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, 14.3만 개 일자리 유지를 지원(6.5 → 20.8만 명, 583 → 3,653억 원)
    - ※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·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, 임금의 일부를 지원(1/2 ~ 2/3 → 2/3 ~ 3/4으로 상향 조정)
  -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40%까지 지급(신규 6.1만여 명, 992억 원)
    - ※ 평균임금의 40%와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지원

-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, 감소된 임금의 1/3씩 노·사·정이 분담(신규 1.7만 명, 182억 원)
  -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자와 기업간 희망임금 차액(월 30만 원, 12개월)을 지원(6천 명, 111억 원)
- ② (취업기회 확대)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(55만 개, 5.5 → 8.3조 원)
- 청년인턴 채용시 6개월간 임금의 70%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(2.5 → 3.7만 명, 985 → 1,629억 원)
  -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 명에게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규 반영(2조 원)
  - 숲가꾸기(2.1 → 2.8만 명), 아이돌보미(5 → 6천 명)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(12.9 → 16.1만 명, 1.2 → 1.5조 원)
  - 학습보조 인턴교사(신규 2.5만 명, 478억 원),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(신규 7천 명, 323억 원), 노인 일자리 확충(16 → 19.5만 명, 1,155 → 1,432억 원)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
- ③ (교육 및 훈련) 미취업 대졸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확대(5,254 → 6,875억 원)
-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(Stay-in-School program) 개설 지원(9.4만 명, 203억 원)
  - 직업상담·훈련·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 확대
    - ※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(1 → 1.5만 명, 84 → 176억 원) 등
  -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(신규 10만 명, 100억 원)
  -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(14.7 → 16.7만 명, 3,358 → 3,878억 원)하고,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대기업 등 우수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증액(3만 명, 210억 원)
- 2009년도 일자리 추경예산이 4.29(수)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
- 추경규모: (정부안)28.9조 원 → (국회 확정)28.4조 원 (△0.5조 원)
    - ※ 세입결손 보전: 11.2조 원 정부안 유지
    - ※ 세출증액: 정부안 대비 0.5조 원 감소한 17.2조 원
    - ※ 국회심의 조정: (증액 1.5조 원, 감액 △2.0조 원)
  - 국가채무: 정부안 대비 0.9조 원 감소한 366.0조 원
  - 일반회계 국채: 정부안 대비 1.5조 원 감소한 35.5조 원

○ 주요 세출 증가액 내용

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

-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로 1,185억 원 지원

※ 정규직 전환지원금: 900억 원

※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감면: 285억 원

- 동 지원방안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,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법률의 제·개정이 확정된 후 집행될 계획

② 돼지 인플루엔자(Swine Influenza: SI) 확산에 대응한 예방 및 검역 강화: 994억 원

③ 지방재정 보완 및 부담완화를 위한 추가지원

④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

⑤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

정부의 일자리 나누기(Job-Sharing) 실천사업장 지원제도

○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방안(2009.1.29)을 발표하였고,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(2009.2.23)를 도출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에 합의하였으며, 추경편성에 이를 반영함.

-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,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(583억 원 → 3,653억 원, 6.5만 명 → 21만 명), 무급휴업근로자 지원수당 신규 반영(6만 명, 992억 원),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금 신규 반영(1.7만 명, 182억 원),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신규 반영(619억 원),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(30억 원 → 50억 원),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(40억 원 → 50억 원) 등의 예산이 반영됨.

○ 일자리 나누기 참여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방안 모색(표 1 참조)

- 기업·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4월중 확정하고 무급휴업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특례 도입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임.

- 근로시간 유연화, 근무제도 효율화, 성과연동임금시스템 등 생산적인 일자리 나누

〈표 1〉 일자리 나누기 실천사업장(근로자) 지원제도

지원제도	제도 내용	혜택시기	해당기관
고용유지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수준 확대 : 중소기업 2/3→3/4, 대기업 1/2→2/3</li> <li>지원요건 완화</li> </ul>	3.12 3월중	노동부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 법인세 감면(50% 소득공제)</li> <li>근로자 소득세 감면(50% 소득공제)</li> </ul>	'10. 3월 '10. 5월	기재부
임금삭감시 임금산정 특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퇴직금 산정 특례</li> <li>실업급여(급여기초임금일액) 산정 특례</li> </ul>	2월 상반기 내	노동부
세무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</li> </ul>	2월	국세청
중소기업 경영 · 금융 우대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</li> </ul>	2.18	중기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출기업화사업 · 수출인큐베이터입주기업 및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기업 선정 · 평가 우대</li> </ul>	2.18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가점</li> </ul>	2.18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</li> <li>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(5억 원→10억 원)</li> </ul>	3.20	
사내근로복지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</li> <li>* 근로자 복지사업비 지출 허용</li> </ul>	4.1	노동부
유휴인력 숙련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 도입</li> <li>유급휴가훈련으로 고용유지와 숙련 제고</li> <li>고용조정 예상업종의 핵심 · 실무인력의 계속 훈련</li> </ul>	3월	노동부
작업장 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작업장 혁신 컨설팅</li> <li>작업장 혁신교육(작업장 혁신 기본,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)</li> <li>작업장 혁신 프로그램(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)</li> </ul>	4월 6월 5월	노동부
향후 추진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급휴가근로자 지원수당</li> <li>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</li> <li>교대제전환고용유지지원금</li> </ul>	하반기	노동부

기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기업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 자문서비스를 추진하고, 고용유지지원금 · 직업훈련지원금 제도 안내 등 노동행정 종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.

○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결정권한이 있는 6,781개 사업장의 22.8%(1,544개소)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표 2 참조).

－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사업장을 보면,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80.6%인 1,244개소, 새로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예정인 사업장은 19.4%인 300개소로 나타남.

〈표 2〉 일자리 나누기 참여 현황

참여업체수			임금조정				근무형태 조정				복합형 (B+C-A)
합계 (A)	고용 유지	고용 창출	소계 (B)	임금 동결	임금 반납	임금 절감 (삭감)	소계 (C)	근로시간 (초과) 단축	휴업	기타	
1,544 (100.0)	1,244 (80.6)	300 (19.4)	1,234 (100.0)	914 (74.1)	244 (19.8)	204 (16.5)	553 (100.0)	123 (22.2)	308 (55.7)	207 (37.4)	243

주: 2009년 4월 9일 기준 수치임.

복합형은 임금조정·근무형태 조정을 병행하는 사업장임.

자료: 노동부, 보도자료(2009.4.13)

- 그리고 임금동결·삭감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가 1,234개소, 근로시간 조정 등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사업장은 553개소, 임금과 근무형태 조정을 병행하는 사업장이 243개소로 나타남.
- 특히, 일자리 나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휴업·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2009년 3월 현재 39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/4분기 고용유지지원금은 10,305건, 784억 원이 지급됨.
  - 고용유지조치 종류별(건수 기준)로 보면, 휴업이 8,956건으로 86.9%를 차지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 휴직 1,171건(11.4%), 훈련 168건(1.6%), 인력재배치 10건(0.1%) 순으로 나타남.
  - 기업규모별(금액 기준)로 보면, 대기업은 162억 원으로 20.7%를 차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이 621억 원으로 79.3%를 차지하여 10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가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.
  - ※ 30인 미만 기업 34.7%, 30~99인 기업 24.2%, 100~299인 기업 18.8% 순임.

**택시 ‘사납금 뺀 수입’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**

- 노동부는 영업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(2009.4.24)
- 개정이유
  - 「최저임금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8964호, 2008.3.21. 공포)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

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정하는 한편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(안 제5조의 2 신설)
  - ※ 모법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산입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임.
  - ※ 택시업종의 근로 및 임금지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·취업규칙·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하되,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복리후생적 임금, 그리고 모법에서 제외토록 한 운송수입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은 제외함.

(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